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 의견을 타국의 ECPAT 멤버들을 통해 수집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한 바가 있었다. 낮은 의제강간 연령(age of consent)에 대한 의문과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나이지리아 Women Consortium of Nigeria (WOCON)의 담당자가 한 말이 마음에 깊게 와 닿았다. “Child is a child.” -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성숙이 이루어졌던, 18살 이하의 ‘아동’은 자신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아이’이며,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또한 벨기에의 법률전문가로부터의 ‘아동 보호의 부재’를 잘 나타낸 사건이라는 의견과, 사회단체의 아동 보호 및 변호 행동은 없었냐는 모로코 담당자의 의문은 한국의 아동보호단체 일원으로써 많은 반성을 하게 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나라에서의 동의연령 기준(age of consent)은 16세였으며, 16세 이하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엄중히 처벌되었다. 특히 법률 전문가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한 벨기에의 경우, 16세 이하의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 법적 동의를 내릴 수 없도록 만든 법률 기준이 성적인 면만이 아닌 다른 모든 방면에서의 아동보호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세 이상의 아동이 성적 관계를 동의한 경우에도 연령이 비슷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아동 성착취를 많이 접해온 나로서는 위의 문항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동안 끊임없이 아동인권 보호단체로부터 제시되었던 의문은, 왜 13세 이상의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느냐였다. 왜 혼자서 다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동’의 성적 동의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아동을 동의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어른이 아동을 마치 같은 연령대의 ‘어른’같이 유혹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성관계를 맺어 임신시키는 것을 왜 ‘사랑’으로 포장하는가? 15살과 42살, 딸뻘인 중학생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진정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16살 미성년자 딸이 밤마다 몰래 집밖으로 나가 20대 성인 남성과의 관계를 맺어온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이다. 딸은 성인남성과 ‘연인관계’였었고, 그들은 집 앞에서 만나 남성의 집으로 차를 타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 아버지의 신고로 남성은 체포되었고,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았다. 그들이 연인관계였던 것과, 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불법이므로 처벌받았다. 그뿐이다.

많은 나라에서 16세, 혹은 17세 이하의 아동은 결정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할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국제단체들은 국제적 기준인 18세에 맞추어 동의연령을 18세로 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3세에 머물고 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대 아이들이 겪는 사춘기를 고려하고, 여물지 못한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그런데 왜 성에 있어서는 아동을 어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설문에 참가한 한 멤버는 좀더 ‘아동친화적인(Child-friendly)’ 법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들에게 한국 법률은 아동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아동은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른에게 의존한다. 어른에게 배우고, 어른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기에, 성숙한 어른에게 의존하고, 배우고, 동경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ECPAT 멤버의 말마따나 불공평(‘unfair’)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문제없이 완벽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로코는 법적 결혼가능연령을 국제 아동기준인 18세로 올리기 위해 노력중이고, 룩셈부르크 또한 아동 성보호의 강화를 위해 그루밍을 범죄로 인정하는 등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의견들을 종합하였을 때 공통적인 점은, 18세 이하 아동의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관계의 의존도가 높고 성적 호기심을 가질 나이인 아동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어른이 어른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휘두르는 폭력이며, 아동의 성착취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몇몇 국가들은 동의연령을 18세로 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평균적인 age of consent는 16세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인 13세는 많이 뒤쳐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학교에서의 육체적 처벌을 금지하고, 폭언을 신고하고, 두발 자유를 보장하고, 정서개발을 위해 큰돈을 들이면서도 왜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언제고 휘둘러질 수 있는 성적 폭력에는 눈을 돌리고 있는가.

케냐의 아동인권 보호운동가는 케냐의 법률에서 지정된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12세에

서 14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며, 그때까지 연령에 대해 고려할만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그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아직 13세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도 그렇고, 근래 들어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착취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밝힐 수 없지만 정말 혐를 찰 정도로 기가 막히는 사건들도 많다. 같은 어른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가하고도 그저 아이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풀려나는 가해자들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추천’ 변호사 또한 물밑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되었다고 억지로나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반복되어 제기되는 의문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외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타국의 아동보호운동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동’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16세 이하 아동을 아동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